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26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자 2015년 귀속 재산세 3,821,210원, 지방교육세 764,24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3,942,840원, 지방교육세 788,560원, 2017년 귀속 재산세 4,039,150원, 지방교육세 807,83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5,662,590원, 지방교육세 1,132,51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9. 5.자 2019년 귀속 재산세 4,743,600원, 지방교육세 948,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이하 'B'라 한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redacted]군 C, D 토지(2017. 4. 20. 위 각 토지가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 구별 없이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관받기로 하고 2015. 4.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5. 3. 착공하여 2017. 5. 31. 준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임대차기간은 2017. 6. 23. 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되, 상호 계약만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분부터 2019년분까지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제2호(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9. 8. 2. 2015년 귀속 재산세 3,821,210원, 지방교육세 764,240원, 2016년 귀속 재산세 3,942,840원, 지방교육세 788,560원, 2017년 귀속 재산세 4,039,150원, 지방교육세 807,830원, 2018년 귀속 재산세 5,662,590원, 지방교육세 1,132,510원의 부과처분을, 2019. 9. 5. 2019년 귀속 재산세 4,743,600원, 지방교육세 948,7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0.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추징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어야 한다. ㉠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에 의하면,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 중인 경우'의 시기(始期)는 착공에 앞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5. 5.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6. 23.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때까지 2년 이상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 이 사건 추징조항의 '다른 용도'라 함은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사용 방법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줄곧 물류창고시설로 건축·사용되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개정 G법상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예비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는 'G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A회사(원고)와 법률 제10522호 G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과는 별도로 위 감면규정에 따라 2015~2017년 재산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위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는 추징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대한 추징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1) 건축물 건축 시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등 참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4. 주식회사 H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건물 착공에 앞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2016. 5. 3.부터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임대의 경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후단 규정(이하 '이 사건 후단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직접 사용'할 목적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는 점,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처분인 점(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이 사건 후단규정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도 '직접 사용'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후단규정은 "일반적인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위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참조).

④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임대'의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추징처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임대'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22776 판결, 대법원 198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등을 근거로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대구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22887 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개정된 것) 제9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위 각 규정에는 이 사건 후단규정과 같은 '임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2016. 5. 3.부터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다가 그 사용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2017. 6. 23. 중소기업자가 아닌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추징은 당초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감면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실질은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감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징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12 내지 16,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B는 1961. 8. 15. G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지원 사업,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나) 국회는 2011. 3. 31. B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 제10522호로 G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G법'이라 한다). 개정 G법은 B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등을 분리하여 '원고'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제134조의2 제1항), 원고의 원활한 신설을 위하여 개정 G법 공포(2011. 3. 31.)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부칙 제2조 제1항), B로 하여금 '자회사의 설립계획 및 원고로의 편입 방향'을 포함한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부칙 제5조 제1항) 및 법령 등의 미비로 원고의 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사업을 즉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G법 시행일(2012. 3. 2.)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원고에 이관하고,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함께 규정하였다(부칙 제6조 제1, 2항).

다) B는 개정 I조합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12. 3. 2. 원고를 설립하였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정 G법 시행일인 2012. 3. 2.로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5. 2. 28.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관하였다. B와 원고 사이에 2014. 12. 24.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에서, B는 원고의 주주로서 B가 영위하는 경제사업 중 농업경제부문의 농산물도매분사, 종묘사업, 식품사업 일부 및 공통사업 일부와 축산경제부문의 축산공판사업, 안심축산사업 및 인천가공사업소 부문을 원고에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1인 주주인 B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라) 이후 B는 개정 G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3~2014년에 걸쳐 수립된 'I조합 사업구조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산하 유통계열사를 통합하여 '농림축산물 및 생활자재 등의 수집, 저장, 보관, 냉장, 운송, 배송, 가공,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인 F을 설립한 뒤 이를 원고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그 과정에서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 G법 부칙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어 'B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B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B는 2015. 3. 2. F을 설립하였고, 2015. 5. 29. 원고와의 주식교환·이전을 통해 원고에게 F의 주식 전부를 이관하였다. 이로써 B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고, 원고가 F의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어 B의 경제사업구조가 개편되었다.

3)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B의 기존 사업부문 중 경제사업부문을 원고에 이관함으로써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 G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G법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B로 하여금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을 그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직접 경제사업을 이관하거나, 자회사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설립하여 이를 원고에게 편입시키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이관'의 사전적 의미가 '관할을 옮김' 또는 '옮기어 관할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관의 성격은 B가 기존에 수행하던 경제사업부문의 관할을 원고로 옮김으로써 경제사업의 수행 주체를 원고 내지 원고가 지배하는 자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내지 원고가 지배하는 자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관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경제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될 뿐이고,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원고 및 그 자회사가 B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및 도매·소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원고 및 그 자회사를 B로 본다'는 내용의 구 G법 제134조의2 제6항, 구 G법 시행령 제15조의4 [별표 4] 제2호도 이러한 이관의 성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② 비록 원고가 자회사인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추징조항이 규정한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이루어졌으나, 개정 G법 시행에 따라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관된 후 일부 경제사업 부문은 원고로 하여금 자회사인 F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이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수익권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 G법 부칙 제5조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B가 아닌) 원고가 추진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B가 수립한 'I조합 사업구조 이행계획'을 이행하고 개정 G법의 취지에 따라 이관기간 내에 이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③ B는 이미 개정 G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인 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경제사업부문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개정 G법에 따른 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에 관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현물출자 하였다. 이후 개정 G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3년이 경과한 뒤에서야 개정 G법 부칙 제2조 및 B가 수립한 'I조합 사업구조 이행계획'에 따라 나머지 경제사업 부분이 자회사인 F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관되었다. 이러한 이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으로 하여금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구 G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제134조의2(A회사)

① B단체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A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⑥ A회사 및 그 자회사가 B단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A회사 및 그 자회사를 B단체로 본다.

▣ G법 부칙(2011. 3. 31. 법률 제10522호)

제2조(A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B단체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A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및 출자 특례)

① B단체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A회사가 추진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B단체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A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B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A회사에 이관한다.

② B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B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B단체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12.31.>

▣ 구 G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A회사 및 그 자회사를 B단체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34조의2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5.2.23.>

A회사 및 그 자회사를 B단체로 의제하는 사업(제15조의4 관련)

1. 법 제57조의2 제1항 제1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2. 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농축산물의 제조·가공 및 도매·소매 사업

라. J센터 사업 끝.